

## Korean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931년 만주침략을 시발점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소위 15년전쟁, 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불리우는 시기에, 일본정부는 주로 식민지 조선(Chosun: 식민지시기 한국의 이름)에서 그리고 일본 및 점령지에서 20만에 이르는 규모로 추정되는 여성을 강제로 연행하여 일본군인들의 성노예로 사용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악소국인 타 민족의 여성에게, 하나의 정책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시행한 폭력으로서, 잔학한 인권유린의 전쟁범죄이다. 이 소위 군'위안부'문제는 전후배상이나 처벌의 대상으로 처리되기는 커녕, 그 모습 자체가 60년이 지난 최근야 비로소 세계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글은 주로 일본군'위안부'의 80-90%를 점했다고 인식되고 있는 한국인 '위안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간에 발굴된 일본군 문서자료와 정신대연구회<sup>1)</sup>와 한국정부<sup>2)</sup>에서 조사한 전위안부 증언을 참고로 했다.

### 1. Why now we are discussing the problem of so called 'Comfort Women'?

우리는 이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왜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는가를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일본정부와 군의 자료은폐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극비리에 위안부 정책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sup>3)</sup> 전쟁후 담당군인들에게 자료폐기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sup>4)</sup>이 최근 군문서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사실 은폐의 태도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것을 시인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도 정부소관의 관계자료가 대다수 미공개 상태에 있어 진상규명에 한계를 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배상이나 책임자 처벌 등의 적절한 법적 책임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sup>5)</sup>

1)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1993, 한울.

2)한국보건사회부가정복지국에서 1993년 12월 현재까지 180여명의 신고를 받고 기초조사를 했다.

3)전쟁중의 군위안소에 관한 문서는 전부 '極秘'문서로 되어 있다.

4)최근 발견된 자료 중 하나는 "제48사단 자료는 정전시 그 대부분을 상사의 지령에 의해 처분하고, 또 나머지도 호주군에 제출하였으므로, 정확한 자료 대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장병들의 기억을 종합해서...."라고 명기하고 있다. 『第48師團戰史資料並終戰狀況』, 1946, 7.

5)1992년 7월 6일 일본정부의 내각관방내각외정심의실은 「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의 정부조사보고서를 냈다. 이것은 경찰청, 방위청,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의 6개 성, 청의 보관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어 1993년 8월 4일, 위 6개성에 더해 법무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미국국립공문서관의 보관 자료 조사와 피해자 면담 결과를 정리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이러한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부분이 약소국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경시와도 관련이 있다. 독일이 주변국들에 상당 정도 배상을 한 데 비해, 일본은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로 임한 적이 없다.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행한 범죄에 대해 죄의식도 없고, 배상해야 할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이다. 이것은 전시에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의 성노예화에 대해서는 전후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 데 비해, 아시아 여성에 대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되지 않은 데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아시아국가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후처리에 있어서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대응의 차이도 중요하다. 미국은 미소냉전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부정을 단죄하는 것을 소홀히 했으며, 특히 아시아에 자본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여 아시아국가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다시금 보장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위안부」문제의 미해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유용성에 대한 세계사회의 인식이 새롭게 경제적인 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도록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우리는 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실제 경험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도 이 사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암암리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묵인되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문화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특히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강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소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문화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再피해」를 거듭 입혀 왔다. 최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세력의 대거 참여로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다소 변화 되었지만, 아직도 이러한 문화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최근 일본군문서의 발굴<sup>6)</sup>과 피해자 및 군인들의 증언<sup>7)</sup>으로 군「위안부」문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피해자 배상과 책임자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단죄되지 않은 과거의 범죄를 처리하고 지나가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의 논의에서 드러

보관 자료는 완전히 공개, 발표되고 있지 않아, 민간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6) 1991년 11월에 「Headquarters, U.S. Naval Military Government, Okinawa, 1945, 11.」이 발견되었고, 12월에는 「United States Offices of War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Team, 1944, 8, 9, 10.」이 공개되었다. 또한 1992년 1월에는 일본 中央대학의 吉見義明교수가 일본 방위청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군위안부 관련 문서를 다수 발굴했다. 이것은 군위안부 문제의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92년 7월 31일에 한국정부의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은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7) 1991년 8월 김학순씨의 신고가 최초로 이루어진 후, 다수의 전위안부가 신고하기 시작했다. 1990년 11월 정식으로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를 위해 1991년 9월 신고전화를 개설했다. 한국정부도 1993년 6월,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8월부터 지원여부를 심사, 지급하고 있다. 현재 180여명이 신고하여 약 150여명이 이 보상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고를 위하여 1992년 1월 「110番」을 개설했다.

나고 있듯이 60년전의 군「위안부」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의 일본정부가 아시아국가들에게 행하고 있는 비도덕성의 문제이고, 경제우선의 사상이 팽배한 세계사회가 지닌 인권 경시의 문제이며,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멸시의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의 피해결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의 타민족 여성에 대한 폭력(예컨대 보스니아문제)을 거듭 거듭 재발시킬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 사망한 중에 살아남은 성노예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II. Socio-Historical Background

군「위안부」문제는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뿌리는 당시 일본의 독특한 사회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 군대의 「위안부」정책이 지닌 독특성 -정부가 기획하여, 주로 식민지 여성을 강제연행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시행한, 엄청난 규모의 군「위안부」정책- 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1) 천황제와 군국주의 강화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수립된 明治정부는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을 반포함으로써 명실공히 절대주의 천황제를 확립했다. 이 헌법에서 천황은 모든 통치권의 총괄자, 육해군의 최고지위에 있는 대원수(大元帥)로서 전쟁을 선포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일본국민은 천황의 신하이므로 천황에 대해 절대적 충성을 강요당했으며, 公교육에서 이러한 황국사관을 교육했다.<sup>8)</sup>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는 근대화(자본주의화)를 주도하여,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국가」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계급사회)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성립된 천황제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매우 엄격한 계급사회로 극심한 차별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식민지 민족에 대한 차별은 천황제 하의 대표적인 차별의 질서화의 형태이다.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이러한 천황제 체제는 쉽게 팃시즘의 형태를 띄게 되었으며, 서구의 팃시즘과는 달리 가부장제적 성향(가부장주의 국가사상)과 지역주의(大아시아주의)사상을 드러내게 되었다.<sup>9)</sup>

메이지시절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군국주의 체제는 안으로는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밖으로는 전쟁을 확대해 갔다. 만주사변(1931)을 기점으로 준전시체제에 들어가고, 중일전쟁으로(1937)으로 본격적인 전쟁기로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천황의 통수권을 확대하는 한편, 明治헌법에서 생각되고 있던 내각, 의회, 추밀원 등의 체제가 아닌 고도국방국가를 구상하여 구조를 정비하였다. 또한 신권적, 군사적 천황, 대원수적 천황의 이데올로기를 국민 구석구석까지 침투시켰고,<sup>10)</sup> 部落會, 町内會 등의 주민자치조직을 행정에 편입시켰다.<sup>11)</sup>

일본정부는 일본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하여, 일련의 경제통제정책, 노무동

8) 鈴木裕子, 『女, 天皇制, 戦争』, 1989, オリジンセンター, pp.7-16.

9)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1964, 未來, pp.29-87.

10) 宮地正人, 『政治史における天皇の機能』, 歴史研究會 編, 『天皇と天皇制を考える』 8호, 1988, pp.98-100.

11) 倉澤進, 秋元律郎, 『町内會と地域集團』, ミネル ア, 1990/91.

원정책, 및 병력동원정책을 실시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동원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종전시 병력동원수는 7,193,000명에 달했고, 노무동원수는 13,104,269명에 이르렀다.<sup>12)</sup> 여기서 조선인과 중국인도 포함된 동원 군인과 노동자들의 전투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위안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 (2) 가부장제와 여성의 동원

천황제는 천황가와 국민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국가의 성향을 드러냈으며, 이 각각의 가정은 家(이데)제도를 구성원리로 하고 있었다. 江戸(에도) 중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明治 시기에 헌법과 민법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른 家제도에서, 부인은 법률상의 무능력자로 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법률상의 의미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남편의 소유물이므로 남편의 승락없이 행동하지 못했다.<sup>13)</sup>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매매혼을, 徳川家康(도쿠가와)시기에 천황제 국가는 공창제도로 확립, 확산시키고, 明治시기에는 창기에 대한 매독검사를 실시했다. 이것은 전란이 계속되어 불안에 떠는 무사들의 성적 욕구를 풀 공식적인 장을 만들어 주어 심리적 안정을 이루게 하고, 그 결과 家제도를 보호,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한 것이었다.<sup>14)</sup> 제도의 변천(1872년의 창기해방령발포와 이후 새로운 형태로의 부활)에 관계없이 하층계급 여성으로 충원된 공창제 하의 창기들의 노예적 생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다. 일본정부는 식민지시기 초기부터 조선과 대만에 공창제를 설립하고, 일본에서보다 열악한 규칙(연령 및 지역 제한 등에서)을 실시했다.<sup>15)</sup>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여성의 성동원을 기획한 것은 이러한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전시의 국가 총동원체제는 여성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일본에서 전시에 여성에 대한 동원은 정신동원, 노무동원, 및 성동원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계급에 따른 차별적 시행이었지만, 어느 경우에도 여성비하의 사상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여성교육에 주목하였는데 여기서 교육의 틀은 家와 國과 母의 결합이었다. 중일전쟁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모성을 통해서 여성의 사상동원을 도모하여, 일본의 모, 군국의 모, 靖國의 모, 건아의 모, 健民의 모, 興亞의 모, 모를 찬양함, 등의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1942년에 만들어진 「대일본부인회」는 「가정보국3강령」과 이에 기초한 「실천14요목」을 발표했는데, 황민으로서의 자녀양육이 그중 하나의 강령으로 되어 있었다.<sup>16)</sup> 한편, 주로 미혼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노무동원이 행해졌다. 1939년부터 노무동원계획에서 미혼여성을 포함시키기 시작하여, 1941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 1943년 생산증강근로인급대책요망,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징용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여성의 노무동원을 확대해 갔다.<sup>17)</sup> 이러한 두 역할 수행에서 제외된 하층여성, 대부분은 창기들에게 군인들의

12) 齊藤泰明, 「兵力, 勞働力の動員と配置」, 大元社會問題研究所 編, 『太平洋戦争下の労働者状態』, 東洋經濟新報社, 1964, pp. 23-26.

13) 角田由紀子, 「性暴力と天皇制」, 鈴木裕子 外 編, 『女, 天皇制, 戦争』, 1989, p. 197

14) 深江誠子, 「賣春制度と天皇制」, 鈴木裕子 外 編, 『女, 天皇制, 戦争』, 1989, pp. 202-205.

15) 山下英愛, 「한국근대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1992,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16) 鈴木裕子, 『女性史を拓む』, 1989, pp. 53-73.

「위안」의 역할이 부과된 것이다. 「군인들의 전의를 고양하고 불평불만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sup>18)</sup> 만들어진 군「위안부」정책은, 공창제도가 전국시기 말 무사들을 위해 설립된 것과 동일한 논리에 바탕한 것으로 공창제도의 한 변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군인의 수가 엄청나게 증대하여, 사실상 일본의 창기로서는 군「위안부」정책은 기획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위안부」의 무진장한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서 군「위안부」정책은 성립된 것이다. 이것은 중일전쟁 후 조선에서 급격히 진전된 민족말살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 (3) 식민지상황과 민족말살정책

1854년에 미국에 의해 개국한 후발국 일본은, 19세기말에 다른 아시아 나라들에 비해 생산력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지만, 여전히 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제국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위협성을 민감하게 인지한 일본정부의 정책과 서구제국의 관심이 인도, 중국, 안남 등에 기울어 있던 세계상황 등으로 인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up>19)</sup> 오히려 일본은 오랜 팽창 야욕의 실현과, <sup>20)</sup> 농민, 무사들의 불만 해소방안으로, <sup>21)</sup> 주변 약소국을 식민지화하게 되었다. 서구제국주의와는 달리, 일본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달의 정도가 낮은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식민지는 서구 나라들에게 있어서와는 달리 자본축적의 지름길로 인식되었다. <sup>22)</sup>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보다 악랄적, 폭력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새로운 토지제도, 법, 화폐체계를 수립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블록경제를 형성했다.<sup>23)</sup> 한국의 경우, 일본상품의 침투와 일본인들의 토지 침탈로 인해 농촌경제가 파탄되어, 많은 수의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고 도시에서도 광범한 층의 빈민계급이 형성되었다. 한편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통제가 강력히 시행되어, 식민지 국민들은 그것의 엄격한 통제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당시 한국은 일본에게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인식되어,<sup>24)</sup> 정치적으로 별개의

17) 여순주,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18) 麻生徹男, 「花柳病の積極的豫防法」, 1939.

19) E. Herbert Norman, 『Japan's Emergence as a Modern State』, 1940,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pp.116-127; Jon Halliday, 『A Political History of Japanes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p.17-55.

20) Shuichi Hatada, 『Labor Conditions in Japa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p.75.

21) Jerome B. Cohen, 『Japan's Economy in War and Reconstruc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49, p.33; Hilary Conroy,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0, p.53.

22) V.G. Kiernan, 『Marxism and Imperialism』, New York: Saint Martin's Press, 1975, p.44.

23) Bruce F. Johnston, 『Japanese Food Management in World War II』,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3, pp.50-51.

24) James B. Crowley, 『Japan's Quest for Aut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p.4-8; Frederick M. Nelson, 『Korea and Old Orders in Eastern Asia』,

부분으로 취급했던 대만과는 달리, 매우 강한 일체화(integration) 정책이 합병초기부터 시행되었다. 합병은 조선의 일본에의 완전한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sup>25)</sup> 조선인을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시키고, 대신 일본인을 조선에서 농지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다.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이것은 폭력적인 조선민족말살정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전쟁기에 돌입한 1938년 일본은 조선에 內鮮一體의 강화를 위한 시설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민족의 완전한 황국신민화를 도모하여, 학교교육에 현행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황국신민서사, 황국신민체조를 의무도록 했다. 황기와 황국연호를 사용하게 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선의 풍속관습을 억압하고 일본의 풍속관습을 강요하여, 의식주도 일본식으로 개조하고, 일본의 축제일을 지키도록 했으며, 무도를 보급하고, 서적, 영화, 음악도 철저히 통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사적 생활, 가정 내에서까지 조선어의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1939년 조선민사령의 개정에 의해서 창씨개명이 강제되게 되었다.<sup>26)</sup> 한편 1937년부터 일본정부는 조선인들과 일본인들과의 혼혈정책을 시행하여 조선민족의 말살을 꾀했다.

1938년 총동원법으로부터 비롯된 조선인에 대한 병력동원, 노무동원은 한편으로 전 시하 그 필요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궤와 맞물려, 매우 혹독한 상황을 결과했다. 병력동원은 징병제 이전의 지원 단계 (1938 육군특별지원령, 1943 대학생육군특별지원령임시채용규칙, 1944 징병제)부터 사실상 강제연행이었으며 (金原節三業務日誌摘錄, 1941.3.1-4.27), 이들은 소모품으로서 대체로 최전방으로 보내졌다. 이미 패전이 확정된 곳으로 보내진 경우도 허다하다. (宮田節子, 1990) 노무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유모집의 단계 (1939 모집, 1942 관할선, 1944 징용)에서부터 사실상 관이 개입한 강제에 의한 것(市原博, 1992)이었으며, 탄광노동의 경우 일본인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가 경내노동에 투입되었고(白戸仁康, 1992), 위험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兵庫朝鮮關係研究會, 1990 등)

엄청난 수가 요구되는, 대부분은 戰場에서 죽고 말, 살아도 不妊化될, 母性的 동원이나 근로동원에서도 소외된 비천한 군「위안부」로서, 조선의 여성이 동원된 것은 민족말살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 (4) 자본주의의 발달과 하층계급의 궁핍화

일본의 자본주의발달이 후발국 일반에서 나타나는 국가 주도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하는 점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Dore, Cole, Vogel 등) 明治시기 이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45, p.296.

25)Chen, I-te,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and Formosa: A Comparison of Its Effects upon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Dissertation, 1968, pp.71-90.

26)박경식, 『일본제국의 조선지배』, 1986, 청아, pp.364-375.

27)이 정책은 1937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秘.朝鮮ニ於ける教育ニ關スル方策, 1937), 1938년 내선일체 실시계획에도 '내선인의 풍혼을 장려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책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나서 1937년에서 42년, 5년간 거의 100%의 증가를 이루었다. (1937년에 朝男日女 449, 朝女日男 643; 1942년에 각각 872, 1009)

후 강력한 정부에 의해 선도된 자본주의의 발달은 식민지 병합으로 가속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본주의 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일반적인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매매춘이 확산되었고, 일본 국내와 더우기 식민지에 광범위한 빈민계급이 형성되었다. 이 하층계급은 전시하에 매우 용이한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전시하 열악한 경제상태와 민족말살화의 과정에서 조선의 하층계급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그 궁핍화도 극에 달했다. 농촌에서는 1930년도에 춘궁농가가 48%에 달했고(박경식, 1986: 507), 1936년에 도시에는 細窮民이 12.9%에 달했다.(강동진, 1977: 210) 조선 전국민의 하층계급화가 진전되었던 것이다. 취업사기에 의한 군「위안부」동원은 물론 폭력에 의한 동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용이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5) 위안소 설립의 직접적 동기

이러한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노동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고(極秘苦力使用ノ要領, 1942), 노동의 효율을 높인다(朝日新聞北海道内13版, 1992.3.13, 15)고 하는 직접적인 「위안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군인들의 경우, 戰場에서의 심리적 안정과 사기 진작, 시베리아 출병시 병력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던 성병 예방, 점령지 주민들의 반일감정을 높인 군인들의 강간 방지 등, 위안소 설립의 직접적 요인이 지적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정신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여 특히 점령지에서 이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로 성적 위안 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sup>28)</sup> 군인들은 외부의 위안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군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군위안소를 만들어 이것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의 설립에는, 군인들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했다. 일본군대가 시베리아에 출병했을 때(1918-1922) 군인들의 성병이 매우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으며, 이 경험이 군위안소설립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다.<sup>29)</sup> 후술할 바와 같이 군위안소에 대한 군대의 통제와 감독 중 위안부에 대한 정기성병검사가 매우 중요했다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 전쟁기에 군위안소의 설립이 확대되었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점령지에서 일본군인들에 의한 강간사건이다. 일본군인들은 점령지역에서 약탈, 강간, 방화, 포로참살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며, 특히 강간은 점령지 주민들로부터 예상외의 심각한 반일감정을 폭발시켰다.<sup>30)</sup> 이로 인해 점령지의 통치가 곤란을 겪음에 따라, 일본군은 「군인개인의 행위를 엄중히 취체함과 동시에 속히 성적 위안의 설비를 정비할」<sup>31)</sup>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일본의 군「위안부」정책은 천황제 국가와 가족 및 공창제도, 그리고 식민지상황과 자본주의 발달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던 사회구조적 배경 속에서, 전쟁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동기에 의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28) 砲銃大本部, 「支那事變の經驗より觀たる軍氣振作對策」, 1940.9.

29) 琴秉洞, 「解説」, 琴秉洞編, 『從軍慰安婦極秘資料』, 綠蔭書房, 1992.

30) 砲銃隊本部, 「支那事變の經驗より觀たる軍氣振作對策」, 1940.9. 歩兵第9旅團, 「陣中日誌」, 1938.7.1-31 号.

31) 歩兵第41聯隊, 「陣中日誌」, 1938.7.1-31.

### III. 일본군위안소의 실태

#### (1) 일본군의 위안소 설립

군위안소란? 만주사변으로부터 2차대전으로 이어진 전쟁기에 존재했던 일본군의 군위안소는 군대의 강제적 규정에 의하여 군인과 군속만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던 곳<sup>32)</sup>이다. 이 군위안소는 지방관민의 사용이 일절 불가능했다.<sup>33)</sup> 다른 한편 군인, 군속은 군위안소 이외의 다른 위안소의 이용 및 매음부, 土民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해졌다.<sup>34)</sup> 군위안소는 설립, 경영, 위안부의 모집에 있어서 군이 직접 한 경우와 민간이 군의 허가, 또는 위임을 받아서 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든 군위안소는 군의 보호 및 원조, 그리고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다. 군위안소는 콘돔과 위안부에 대한 군의 정기검진을 군으로부터 제공 받았으며, 군이 정한 위생, 청결사항을 엄수해야 했고, 이밖에도 군에서 정한 위안소규정의 여러 내용에 따르지 않으면 안됐다. 정기적으로 군대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고,<sup>35)</sup> 위안부의 이동까지도 군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sup>36)</sup>

형성시기: 군위안소는 일본군대가 아시아대륙에 진출하기 시작한 1930년대 초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다. 1932년 상해사변시에 상해주둔군인들의 증원에 의해 해군위안소를 설치했으며,<sup>37)</sup> 이때 군인들의 강간사건을 막기 위하여 일본내지에 군대위안부를 요청한 기록이 있다.<sup>38)</sup> 지난 12월 6일에 새로 발견, 공개된 자료는 1933년 4월에 만주에서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립하고, 위안부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직적 관리를 실시했음을 밝히고 있다.<sup>39)</sup> 이것은 1930년대초에 만주에서 군위안소를 사용했다고 한 전 일본군인의 증언<sup>40)</sup>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또한 1934년 상해에 이미 14개의 해군위안소가 있었고,<sup>41)</sup> 이곳의 위안소에 대한 군대의 협조, 또는 단속이 심했고, 위안부들에 대

32) "위안소사용은 제복 차림의 군인 군속에 한함." 軍政監部ビサヤ支部イロイロ出張所, 「慰安所規定送付の件」, 1942.11.

33) "...절대지방객은 접할 수 없음." 在上海總領事館, 「外務省警察史, 支那の部: 昭和13年中ニ於ケル在邦人ノ特種婦女ノ狀況及其ノ取締並ニ租界當局ノ私娼取締狀況」, "...지방관민은 일절 이용불가." 山第3475部隊, 「軍人俱樂部に關する規定」, 1944.12.

34) "...군인, 군속은 다른 위안소의 이용을 엄금함." 山第3475部隊, 「軍人俱樂部に關する規定」, 1944.12. "...軍所定이외의 매음부, 土民등과의 접촉은 엄히 근절할 것." 教育總監部 編修, 「戰時服務要綱」, 1938.

35) "...위안소 경영자는...영업상태를 군정감부에 보고할 것." 軍政監部ビサヤ支部イロイロ出張所, 「慰安所規定送付の件」, 1942.11.

36) "...특종부인은 군의 명령에 의해 이동하고 있는 상태임." 在九江領事館, 「外務省警察史, 支那の部」, 1938.12.1.

37) 在上海總領事館, 「外務省警察史, 支那の部」, 1938.

38) 稻葉正夫編 「岡村寧次大將資料」, アジア太平洋戦争韓國人犠牲者補償請求事件, 「訴狀」第2版, 1992:25에서 재인용.

39) 混成第14旅團司令部, 「衛生業務旬報」(1932.9-1933.12) 34編, 「藝娼妓酌婦健康診斷實施要領」, 朝日新聞 1992.12.6.에서 재인용.

40) 從軍慰安婦110番編輯委員會編, 「從軍慰安婦110番」, 1992.

41) 在上海總領事館第2, 「昭和10年在上海總領事館警察事務狀況」, 1935.

하여 매주 1,2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기록<sup>42)</sup>도 있다. 그후 군위안소는 일본군대의 주둔지의 확장에 따라 늘어나서 1930년대말에는 지역에 따라 이미 그 양적 확대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한 곳도 생겨났다.<sup>43)</sup> 그러므로 군위안소의 형성시기로 널리 생각되었던 1937년은<sup>44)</sup> 군위안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되었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군문서자료와 전쟁의 상황에 기초하여, 군위안소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1931년부터 1936년까지의 시기, 1937년부터 1940년까지의 시기, 그리고 일본군대가 말레이반도에 상륙하고 진주만을 공격한 것을 기점으로 아시아대륙의 넓은 부분을 점령하기 시작한 1941년 이후의 세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미 1933년 만주에서 위안부들에게 실시한 건강검사의 결과에는 38명 중 35인이 조선인이었음이 드러나,<sup>45)</sup> 위안소의 형성초기부터 조선인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설립지역: 1930년대초부터 종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일본군대의 위안소가 세워졌던 지역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모든 곳'<sup>46)</sup>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자신의 경험을 밝힌 전일본군인들의 증언도 군위안소가 광범한 지역에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7)</sup> 중국, 만주 등 일본군의 점령지역은 물론, 대만과 한국 등의 식민지와 일본 내지예까지 위안소가 있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슌바와섬(スンパワ島)에 까지 조선인 위안부 및 관계자 50인이 있었다는 기록<sup>48)</sup>은 조선인 위안부가 얼마나 광범한 지역에 걸쳐 동원되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한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의 이동에 따라, 또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위안을 강요 당했다.

군위안소의 형태: 군위안소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위안소의 설립은 군대가 한 경우,<sup>49)</sup> 민간이 설립하여 군의 허가를 받은 경우,<sup>50)</sup> 그리고 기존의 민

42) 在上海總領事館, 「外務省警察史, 支那の部」, 1936. 在天津總領事館塘沽出張所, 「外務省警察史, 支那の部」, 1937.

43) “근래 각종 위안설비(식당, 카페, 요리점 기타)의 증가와 함께 군위안소는 점차 최미의 징후가 있음.” 波集團司令部, 「戰時旬報」, 1939.4.10-20.

44) 千田夏光, 鈴木裕子, 김일민 등.

45) 混成第14旅團司令部, 「衛生業務旬報」(1932.9-1933.12) 34編, 「藝娼妓酌婦健康診斷實施要領」, 朝日新聞 1992.12.6.에서 재인용.

46) “The ‘comfort girls’ have been found wherever it was necessary for the Japanese Army to fight.” “United States Offices of War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Team, 1944.

47) 從軍慰安婦110番編輯委員會便『從軍慰安婦110番』, 1992.

48) 第48師團, 「戰史資料並終戰狀況」, 1946.7.

49) “각부대는 위안소 개설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숙히 보고할 것.” 第62師團會報綴「石兵團會報」56號, 1944.9.17. “명령: 중대는 明5일 소명의 가옥에 假위안소설비를 급조할 것.” 要塞建築勤務第6中隊, 「陣中日誌」, 1944.6.1-6.30. “管理班山口軍曹이하5명은 위안소설비작업을 실시한다.” 第62師團副官部, 「陣中日誌」, 1945.1-2.

50) “개설 희망자는 본처 의무과에 와서 신청할 것.” 呂集團特務部, 「呂集團特務部月報」, 1940.5.4.

간 위안소를 군이 지정하여 군위안소로 편입, 정리한 경우<sup>51)</sup> 등으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 민간이 설립한 경우에도 군위안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의 허가를 받고, 군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했다.<sup>52)</sup> 민간 영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영업세로 납부했다.<sup>53)</sup>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에서 볼 때, 대체로 군이 직접 위안소를 설치한 경우는 후기로 갈수록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위안소를 설립한 경우는 대부분 군대 밖에 위안소가 있었으나, 군대가 직접 설립한 경우는 부대 안에 있던 경우와 부대 밖의 민가나 학교를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로 나뉜다. 경영은 군대가 위안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군이 직접한 경우<sup>54)</sup>와 군이 민간인에게 위임한 경우로 나뉜다. 따라서 설립과 경영의 관계에 따라 군위안소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 (2) 군위안부의 성격

15년간의 전쟁기간 중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세워진 군위안소에 동원된 군위안부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떠한 경로로 군위안부가 되었는가.

국적: 전쟁기간 중 군위안부의 80-90%가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것은 군위안소자료로서 가장 초기에 발견된 자료 중 하나인 麻生徹男 군의의 상해 위안소 상황에 관한 증언<sup>55)</sup>과 군위안부에 대한 선구적 연구자인 千田夏光의 조사<sup>56)</sup>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조선인위안부의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은 지난 7월 일본정부가 공개한 군문서<sup>57)</sup>와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12월 6일에 발견, 공개한 만주군 자료<sup>58)</sup>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민간단체에서 개설했던 신고전화 「110番」에 신고한 전일본군인들도 남아시아, 남양군도, 필리핀 오지의 위안소에 위안부가 거의 조선인이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남경, 蕪湖 등지에서 조선인에 비해 일본인과 중국인의 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자료가 발견되었으나,<sup>59)</sup> 조선인 대다수說을 반증하기에는 미약하

51) “해군당국이 유곽을 시찰, 점검해 위생상황이 양호한 6개소를 지정해 兵員의 위안소로서... 위생講話를 행함.” 第3魚雷艇隊, 「第3魚雷艇隊戰時日誌」, 1944.7. “...既設의 위안소에 대해서는... 일반거류민의 편리도 고려하면서 그 일부를 특종위안소에 편입, 정리할 것...” 在南京總領事館, 「外務省警察史, 支那の部」, 1938.4.16.

52) “영업자는 3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것.” 呂集團特務部, 「呂集團特務部月報」, 1940.15.4.

53) “면허비 50전, 매월 영업세 7圓.” 앞의 자료.

54) “부대副官은 군인구락부의 업무를 통괄, 감독, 지도하고 원할, 확실히 운영할 것... 부대附醫官은 위생시설... 부대主計官은 경리에 관한 업무를 담임...” 中山警備隊, 「軍人俱樂部利用規定」, 1944.5. 山第3475部隊 軍人俱樂部業務分擔表 참조. 「軍人俱樂部に關する規定」, 1944.12.

55) 麻生徹男, 「花柳病ノ積極的豫防法」, 1939.6.26.

56) 샌다가코오, 이송희 옮김, 『중군위안부』 백서방, 1991.

57) 「在 ? 在留邦人統計」, 1939.

58) 건강검진결과에는 “38명중 조선인이 35명”이었다. 混成第14旅團司令部 「藝娼妓酌婦健康診斷實施要領」, 朝日新聞 1992.12.6에서 재인용.

59) 支那派遣軍總司令部, 「副官合同實施の件」 1942.10. 南京第15師團軍醫部, 「極秘昭和18年2月衛生業務要報」.

다. 이밖에 중국각지에서 중국인 위안부가 동원되는 등, 점령지 본토인도 위안부로 강제되었던 사실이 다수의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으나,<sup>60</sup>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일본인 위안부는 장교용이고 조선인은 병사용이었다든가, 일본인은 장교용, 조선인은 병사용, 대만인은 군속용이었다는 증언도 前일본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sup>61</sup> 그러나 대부분의 군문서자료에 나타난 위안소 규정에서는 같은 위안부들을 장교와 병사가 시간만 달리하여 이용하도록하고 있으므로,<sup>62</sup> 이러한 위안부의 국적에 따른 규정은 일부에서만 시행되었고, 일반적으로 일본군위안소에서 시행되었던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이: 일본에서 공창의 창기 연령은 18세이상이었으며, 조선에서는 17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sup>63</sup> 군위안부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나이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 중국주둔 군대의 한 자료는 창기는 16세이상이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으나,<sup>64</sup> 대부분의 위안소 규정에는 위안부의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정부에 신고한 전위안부의 경우, 대부분이 14세에서 19세에 언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나이제한의 규정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 일본군대가 위안부의 나이를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조선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우선적으로 언행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경제적 배경: 한국정부에 신고한 전위안부의 대부분은 매우 가난한 농가출신으로, 학력도 낮았다. 일본정부는 강제언행으로 일어날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층계급에서 위안부를 언행했던 것을 볼 수 있다.

### (3) 위안부의 동원방식

위안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충원되었는가의 문제는 현재 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한 일간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1942년부터 패전까지 山口노무보국회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동원을 담당했던 吉田清治는, 일찌기 육군대본부로부터 트럭과 군인등을 제공받아 제주도에 와서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증언했다.<sup>65</sup>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발견된 군문서에서 위안부의 동원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군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언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증언자료들에 의하면, 위안부 모집은 조선에서 대거 행해졌으며, 거의 전부가 강제(취업 사기를 통한 강제 포함)적 방식이었다. 모집주체는 군인, 현

60) タクロバン憲兵分隊, バギオ分隊, 「第14軍憲兵隊軍事警察月報」, 1943.

61) 從軍慰安婦110番編輯委員會編, 「從軍慰安婦110番」, 1992.

62) 獨立山砲兵第3聯隊, 「陣中日誌」, 1941.4.1-6.4.30. 獨立守備步兵第35大隊, 「陣中日誌」, 1942.4.1-17.6.30. 등 다수.

63) 山下英愛 「한국군대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50.

64) 呂集團特務部, 「呂集團特務部月報」, 1940.

65) 요시다세이지. 현대사연구실 옮김,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잡아 갔다』 청계연구소, 1989.

병, 또는 경찰이 한 경우, 민간인이 모집과정이나 교통편 등에서 군,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민간인이 모집을 한 경우에도 모집인과 위안부는 원칙적으로 동행증이 있어야 했으므로,<sup>66)</sup> 사실상 일본정부나 군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여러 군문서들은 군이 모집과정에서의 소요를 막기 위해 모집을 맡을 자의 人選에 신중을 기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서,<sup>67)</sup> 민간이 모집을 한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군이 이것을 도와주었거나, 통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정부에 신고한 사람 중에는 강제노동을 위한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군위안소로 끌려간 경우가 다수 나오고 있다. 전쟁말기에 일본정부의 위안부 동원은 보다 폭력적이고 사기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4) 위안소의 규정과 실제

군위안소들은 각기 군이 정한 위안소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위안소 규정에는 계급별 위안소 사용시간, 요금, 성병검진 및 기타 위생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안소에 따라 달랐으나 대체로 위 사항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엄히 이행하도록’<sup>68)</sup>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 그 규정이 실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용시간: 위안소의 사용시간이 규정되고 이를 엄수하도록 했다.<sup>69)</sup> 우선 여러 부대가 하나의 위안소를 사용한 경우, 요일별로 각 부대의 사용 요일이 지정되었다.<sup>70)</sup> 위안소에 따라 시간은 다르나 병사, 하사관, 장교별로 사용시간이 달리 배정되어 있었으며, 사정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기도 했다.<sup>71)</sup> 1인당 사용시간도 30분, 또는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정규 사용시간 후, 밤에 자고 가는 것도 별도의 요금으로 허가되었다.<sup>72)</sup> 이러한 시간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일본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위안소에 몰려 한사람이 2-3분정도밖에 위안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2-30명이 문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는 것이다.<sup>73)</sup> 전위안부들도, 대부분 위안소에 시간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주말에는 규정된 시간과 관계없이 군인들이 몰려들어 심한 경우 하루에 100명도 넘는 군인을 상대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무리한 취급으로 위안부들의 대부분은 성병이나 군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이외에도 갖가지 병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66) 「支那事變ニ際シ邦人ノ渡支制限並取締關係暫定處理要綱」, 1940.5.

67) 「支受大日記密」, 1938.3.4.

68) “주둔지 군위안소 사용규정은 엄히 이행할 것.” 獨立混成第15聯隊本部, 「陣中日誌」, 1945.10.1-10.31.

69) 獨立混成第15聯隊本部, 「陣中日誌」, 1945.1.1-1.31.

70)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慰安所使用規定」, 1938.3.을 보면, “토부대는 일요일, 栗岩부대는 월요일, 松村부대는 수요일.....기타 임시 주둔부대의 사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시함.”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71) 獨立山砲兵第3聯隊, 「陣中日誌」, 1941.4.1-16.4.30. 등.

72) 獨立守備歩兵第35大隊, 「陣中日誌」, 1942.4.1-17.6.30. 등.

73) 從軍慰安婦110番編輯委員會編 『從軍慰安婦110番』. 1992.

요금: 위안소의 규정에는 군인들의 계급별로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이 명기되어 있었다. 예컨대 1942년의 한 군위안소 규정을 보면, 兵은 30분에 1円, 1시간에 2円이고, 하사관은 각각 1.5円, 2.5円, 그리고 장교는 3円, 4円이었으며 一泊에는 8円이었다.<sup>74)</sup> 규정된 요금의 역수는 장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랐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은 대부분 표(切符)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sup>75)</sup>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대한 급료의 지불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위안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극소수가 군인들로부터 받은 표를 한 달 또는 두세달에 한번씩 돈으로 정산해 받았고, 다수는 톱을 받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군인들로부터 표는 받았지만 관리인에게 주고 돈으로 그것을 정산해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어떤 위안부는 관리인이 이 표를 계산해 두었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면 돈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매일 일본이 이기라고 기도했다고 증언했다.

한 위안소 규정은 위안부의 국적에 따라 요금을 달리 규정했다. 예컨대 하사관의 경우 일본인은 2円, 조선인은 1円 50銭, 중국인 1円이었다.<sup>76)</sup> 「110番」에 신고한 전일본 군인 중에도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순으로 위안부의 요금이 비쌌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안부 국적별 차별 요금제도는 전위안부의 증언 중에는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기검진 및 위생상황: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안부에 대한 정기 성병검사는 군위안소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일주일에 한번, 또는 2주, 한달에 한번씩의 軍醫에 의한 위안부 검진을 명기한 위안소규정이 많은 군문서와 연구자료에서<sup>77)</sup> 발견된다. 또한 위안부 건강진단의 결과를 보고한 자료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sup>78)</sup> 전위안부들도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혹은 위안소로 온 군의에게 성병검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달라서, 주 1회, 매달 두번, 매달 한번 등 다양했다.

일본군은 군인들사이에 성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콘돔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군인들에게 콘돔을 지급했으며, 군인각자가 이것을 지참하지 않고 위안소에 갈 경우나, 군위안소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하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안소에 콘돔을 공급했다.<sup>79)</sup> 전위안부들도 대부분이 군인들은 콘돔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군인이 있으면 이를 위안소를 지키는 헌병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

74) 獨立守備步兵第35大隊, 「陣中日誌」, 1942.4.1-6.30.

75) “切符제도에 의해 혼잡을 방지할 것.” 2A司令部, 「第2軍狀況概要」, 1938.12.10. 등

76)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第2中隊, 「陣中日誌」, 1938.1.1-13.4.30.

77)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慰安所規定」, 1938.3. 獨立守備步兵第35大隊, 「情報旬報」, (第19號), 1942.12. 등.

78) 特設部隊, 特設艦船, 「支那事變第8回功績概見表綴」, 海軍武功調査, 1940.4-11. 등.

79) “위생샷쿠는 후방시설담당부대에 일괄교부하고...” 第62師團會報綴, 「石兵團會報」 第64호, 1944.10.2. “현재 군에서는 한명당 2개월에 1회의 위생샷쿠를 교부했으나, 다음의 이유에서 각 위안소 경영자에 불하할 것... 군인각자가 샷쿠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군위안소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군위안소 이외의 장소에 가서 사고를 발생할 위험이 있음.” 陸軍省, 「昭和17年 陸支密大日記 第39號」.

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군인들이 많았다고 대부분의 전위안부들은 증언했다. 콘돔은 군인들이 각자 가져 오기도 하고,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의 방에 갖다 놓기도 했다. 한번 사용한 콘돔을 빨아서 다시 사용하여 한개를 5번정도 사용한 후 버렸다고 증언한 사람도 몇사람 있다. 이들은 이것을 물에 빨 때, 매우 비참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밖에 소독을 포함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군문서들<sup>80)</sup>이 발견되며, 매번 군인을 받은 후 소독수로 밀을 씻었다고 한 전위안부들의 증언도 있다.

이러한 모든 위생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들 사이에 성병이 적지 않았다. 위안부들의 성병검진을 보고한 기록에는 다수의 위안부들이 성병에 걸린 사실과<sup>81)</sup> 성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sup>82)</sup>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진無用論이 주장되기도 했다.<sup>83)</sup> 위안부가 성병에 걸렸다고 판정이 날 경우, 치료가 될 때까지 군인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sup>84)</sup> 위안부가 성병이 걸렸을 때, 일본군은 '606호'라고 하는 주사를 투하했다. 이 주사는 현재 동물들에게만 사용하는 매우 독한 주사로, 당시 위안부들에게 이 주사는 성병 치료와 함께, 임신시에는 낙태의 효과도 나타냈으며, 계속적인 투하로 불임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은 위안부들이 간혹 있었고, 낳은 아이는 위안소 밖으로 버려졌다.

잔학행위: 이밖에 위안소의 규정에는 위안소 내의 음주를 금한다거나, 酒氣가 있는 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영업자에 대해 포악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발견된다.<sup>85)</sup>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군인들이 위안부들에게 매우 잔혹한 행위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안부들은 위안소 밖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받았으며, 이것을 비롯한 각종 위안소의 규정을 어겼을 때, 또는 위안을 거부했을 때, 심한 매질을 당하거나 총검으로 찔리는 등, 무서운 처우를 당했다. 위안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경우에는 심한 경우,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위안소에서 사탕위급을 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대부분의 위안부들이 가지고 있으며, 적지 않은 위안부들이 실제로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기도했다.

#### (5) 패전시 일본군의 위안부에 대한 처리

일본군은 이와같이 위안부들을 이용하고, 패전시에 군대가 위안부들을 데리고 귀향한 경우는 드물다. 전일본군인들의 여러 증언에 의하면, 위안부들을 위안소에 유기한 경우, 일본군인들과 함께 자살을 강요한 경우, 굴에 넣거나 잠수함에 실어서 죽인 경우 등,<sup>86)</sup> 패전시 일본군의 위안부들에 대한 처리는 조선에서의 모집과정과 위안소에서

80) 軍政監部ヒサヤ支部イロイロ出張所, 「慰安所規定送付ノ件」, 1942.11. 山第3475部隊, 「軍人俱樂部ニ關スル内務規定」, 1944.12. 등.

81) 波集團司令部, 「戰時旬報」, 1939.4.10-20. 南京第15師團軍醫部, 「極秘昭和18年2月衛生業務要報」, 등.

82) 特設部隊, 特設艦船, 「支那事變第8回功績概見表綴, 海軍武功調査」, 1940.4-11.

83) 麻生徹男軍醫少尉, 「花柳病の積極的豫防法」, 1939.6.26.

84) 山第3475部隊, 「軍人俱樂部ニ關する内務規定」, 1944.12.

85) 獨立攻城重砲兵第2大隊, 「慰安所規定」, 1938.3.

86) 윤경옥, 「경신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경신대문제자료집1」, 1991.

의 대우보다 더욱 잔혹했다. 많은 전위안부들은 어느날부터 갑자기 군인들이 위안소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귀국했거나, 미군수용소에 있다가 미군의 도움으로 귀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6) 귀향후 전위안부들의 생활

전쟁에 관한 많은 자료들과 관계자들의 증언에 기초하면, 위안부들 중 살아남은 사람의 비율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귀향한 전위안부들은 이후, 위안부를 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매우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 위안부 생활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이들에게 가해져 온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위안부를 했다는 자격지심, 위안부생활에서 얻은 병, 주위의 편견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전위안부들의 가장 큰 한은 여자로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가정을 가지지 못한 점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sup>87)</sup> 한국정부에 신고한 전위안부 중 극소수만이 결혼을 했으나 대부분 아이도 낳지 못하고 이혼하거나 쫓겨났다. 이들이 결혼에 실패한 이유는 아이를 못낳는다는 것,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이 탄로 난 경우, 성병이 재발한 경우, 정신병 등 다양하다. 결혼해 아이를 낳은 한 전위안부는 아이가 매독균에 감염되어 정신병에 걸리게 된 경험을 고백했다. 대부분의 전위안부들은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첩이 되거나 일시적인 동거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도, 위안부 생활의 경험이 탄로 날까봐, 성병이 재발할 걱정 때문이었다. 전혀 남자와 관계없이 혼자 생활해온 사람도 적지 않다.

위안부 생활에서 생긴 병으로 이들 대부분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병과 불임 이외에도 갖가지 부인병, 소화기병, 심장병, 관절염 등 여러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다. 극심한 경제적 곤란으로 병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악화되기만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몇명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 면에서 매우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민간단체와 정부에 신고한 후, 외부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으며,<sup>88)</sup> 지난 8월부터는 한국정부로부터 전위안부 한사람 당 일 시금 500만원과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보험과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얼마간의 경제적 도움이 이들의 상처를 아물릴 수는 없다. 신고한 전위안부들은 위안부 시절에 당한 잔혹한 대우 뿐아니라, 이후 당한 정신적 再피해를 되살리며,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처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의 짓밟혀진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은폐되어왔던 역사를 밝혀 바로잡는 것이다. 영문도 모른채 전장으로 끌려가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린 일본군과 정부의 책임자를 가려 단죄하고, 올바른 심판에 따라 동정이 아닌 정당한 배상을 이들에게 하는 것이다.

#### IV.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 V. 맺음말

87) 이상화, 「군위안부여성의 귀국후 삶과 경험인식에 대한 연구: 결혼을 중심으로」, 1993,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88) 1992년 10월과 199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모금한 돈을 신고한 전위안부들에게 지급했다.